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8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발 의 자: 김성준 의원(1명)
찬 성 자: 김원태, 박강산, 박승진,
박유진, 박철성, 서준오,
송도호, 오금란, 왕정순,
유만희, 이병도, 이상욱,
이영실, 이원형, 임규호,
임종국, 정준호, 최기찬
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는 지역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으로, 안정적인 운행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함.
- 현행 제도에서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인력 부족과 운행률 저하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하고, 재정지원 기준액 결정의 지연을 최소화하는 한편,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절차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기준운송원가 산정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재정지원 기준액 결정 시기를 구체화하며, 재정지원 집행 원칙과 위원회 운영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 하여 반영토록 함(안 제3조제3항)
- 나.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을 매년 4월까지 정하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삭제함(안 제3조제4항)

다.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과 회의소집 요건을 신설함(안 제13조제1항, 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”를 “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반영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매년 초에 정하고, 예산의 범위내에서”를 “4월까지 정하고,”로 한다.

제13조의 제목 “(운영)”을 “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1. 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2. 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
3. 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4.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·개선에 관한 사항
5. 시민 만족도,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
6.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
7. 마을버스 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

8. 마을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마을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심의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④ <u>시장은 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선정기준 및 재정지원 기준액(재정지원 대상업체의 운송원가에서 이윤을 제외한 금액)을 매년 초에 정하고,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 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(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기준운송원가의 산정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반영하고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<u>매년 4월까지</u> 정하고,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그 부족분을 지급할 수 있다.</p>
<p>제13조(운영) (신 설)</p>	<p>제13조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</p> <p>① <u>마을버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마을버스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</u> 2. <u>마을버스 노선 및 요금조정에 관한 사항</u> 3. <u>보조금 등의 마을버스 재정지</u>

(신 설)

제1항 ~ 제5항 (생 략)

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

4. 마을버스 운영체계의 조정·개선에 관한 사항

5. 시민 만족도, 인센티브 평가제 등에 관한 사항

6. 차고지 및 승차대 등 버스관련 시설에 관한 사항

7. 마을버스 관련 시민제안 및 주요 민원사항

8. 마을버스 차량 개선 및 안전성 향상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마을버스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3항 ~ 제7항 (현행 제1항 ~ 제5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항 정비(법령 준수 의무, 구체적 기한 명시)와 소관부서(교통실 버스정책과)에서 기운영중인 위원회¹⁾의 세부 운영사항(심의내용 및 소집방법)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('24. 12. 9.~) : 임기 2년, 위원장·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이내 구성